

#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계·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·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
-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.

### 나.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내지 제7조)

-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.

### 다. 대표협의체(실무협의체 포함)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며, 각 실무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라.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군수 및 재적 위원 1/3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
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
마.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4조)

바.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5조)

### 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입법예고('05.2.2 ~ 3.10)결과 의견제출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함.
- 라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##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
  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  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 4.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-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군수·환경복지과장·보건의료원장·실무협의체 위원장, 군의회 의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다만,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환경복지과 사회복지분야 담당과 보건의료원 보건 및 의료분야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명단 공개)**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"각 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  
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 및 직원)**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 
②간사는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  
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 등)**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 
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  
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 
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회의록)**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기타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의결사항의 처리)**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견의 청취)**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공청회 등의 개최)**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4조(회의 수당)**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 등에게는 「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**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**제7조의2(지역사회복지협의체)**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, 사회복지·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4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회복지위원회"는 "지역사회복지협의체"로 본다.

**제7조(사회복지위원회)**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7.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,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를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
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

**제1조의3(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,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1조의4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 
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2.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
  3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부칙①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조의2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.